

『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5월 4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5월 15일

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설 동 주

나. 제안이유

○ 2017년 7월 낙동강 체육공원 내 구미캠핑장 개장에
따라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으로 시민들에게
레저체험 및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캠핑장의 목적, 위치 및 정의(안 제1조 ~ 제3조)
- 개장일, 사용시간(안 제4조 ~ 제5조)
- 사용료, 사용료 감면 및 반환(안 제6조 ~ 제8조)
- 시설의 예약(안 제9조)
- 사용자의 준수사항, 손해배상(안 제10조 ~ 제11조)
- 시설의 사용제한(안 제12조)
- 위탁 관리 및 운영(안 제15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
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, 「지방공기업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영 수

○ 본 「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은

- 「낙동강 체육공원」내 조성된 구미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, 시설사용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, 캠핑수요 증가와 가족단위 레저활동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